

의안번호	제 83 호
의결 연월일	2018. . . . (제 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기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
----------	----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심기보,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최경천,
송미애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안 제4조)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등
- 나.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개정함 (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운용관 → 분임기금재무관,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 (안 제6조)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기금 업무담당 국장
 - 위원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대표자 포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53호
- 라. 협의 : 보건복지국 식의약안전과
- 마.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제4조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제4조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영 제61조 사업”을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국장
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제5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지출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 을 “다음 각 호의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고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를 “구성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

4. 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

제6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2년으로써” 를 “2년으로 하되” 로,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 인” 을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식품위생 업무담당” 을 “기금 업무담당” 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해제될” 을 “위촉 해제될”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위원장과 같은 조 제4항의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 략)</p> <p>4. 그 밖에 <u>법 시행령</u>에서 정한 수입금</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식품위생법 시행령</u>」 (이하 “<u>영</u>“이라 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u>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등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u></p> <p>2. ~ 8.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9. 그 밖에 <u>영 제61조 사업</u> 및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기금의 용도) ----- -----.</p> <p>1. <u>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u></p> <p>2. ~ 8. (현행과 같음)</p> <p>9. <u>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u></p> <p>10. 「<u>공익신고자 보호법</u>」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u>상환액의 지원</u></p> <p>11. ----- <u>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u>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①·② (생략)</p> <p>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p> <p>2. 분임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 업무담당 과장</p> <p>3.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p> <p>④ (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p> <p>2. 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담당 국장</p> <p>3. 분임기금재무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p> <p>4. 기금지출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p> <p>5.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구성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u>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식품위생 업무담당 국장</u> 2. <u>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 3. <u>그 밖에 식품위생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자</u> <p><u><신 설></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u> 연임할 수 있으며, <u>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u></p>	<p>③ <u>위원장은 기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기금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충청북도의회 의원</u> 2. <u>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 3. <u>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u> 4. <u>금융·예산·회계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대표자</u> <p>⑤ ----- 2년으로 하되 ----- 공무원과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인 -----.</p> <p>⑥ ----- 기금 업무담당 -----.</p>

현행	개정안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u>해제될 수 있다.</u></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위촉 해제될</u> -----.</p>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시·군·구의 경우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주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기금의 회계직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